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4일 박찬원 의원이 발의하였고, 2019년 1월 21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용어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정비하여 용어 사용의 통일을 기하고, 그간 개정된 근거법령명과 잘못된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폐질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정비하여 용어사용의 통일을 기함
(안 제2조제4호)
- 나. 개정된 근거법령명 정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
- 다.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용어사용을 통일하고 그간 개정된 근거법령명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잘못된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